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건명: 김용수 소유물건(2025타경11022)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법보좌관  
신범식

감정평가서번호: 달서202505-40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달서감정평가사사무소

#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황재창

감정평가액	사천오백만원정 (₩45,000,000.-)					
의뢰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사법보좌관 신범식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용수 (2025타경11022)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5.29	2025.05.28 ~ 2025.05.29	2025.05.29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아파트	1세대 이	아파트	1세대 하 여	- 백	45,000,000
	합계					₩45,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 감정평가개요

###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에 소재하는 '행복아파트 제101동 13층 1309호 아파트 단 위세대'로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경매'목적 감정평가임.

### 2. 대상물건 개요

#### □ 구분건물

소재지(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114-4 (수출대로3길 68-27 (공단동)) 행복아파트 제101동 13층 1309호
------------	--

#### ■ 단지 내역

단지명	행복아파트	단지세대수	279세대
대지면적	8,196㎡	연면적	19,557.95㎡
건축면적	1,927.907㎡	용적율산정용 연면적	17,926.42㎡
건폐율	23.522%	용적률	218.83%

#### > 동별 건물내역

동명칭	101동	동 세대수	250세대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16,242.88㎡
건축면적	1,087.54㎡	용적율산정용 연면적	15,281.34㎡
층수	지상15층/지하1층	사용승인일	1993-06-24

#### > 호별 건물내역

기호	동	층	호	전유면적(㎡)	공용면적(㎡)	대지권비율
가	101동	13층	1309호	49.55	17.1489	8,196 중 27.951/8,196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3. 기준시점 및 조사기간

###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5월 29일을 기준시점으로 정함.

###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현장조사 및 관련자료조사 : 2025년 05월 28일 ~ 05월 29일.

##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가.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나.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해당사항 없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1. 감정평가방법

- 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법,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거래사례비교법 및 공시지가기준법,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환원법이 있음.
- 나.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제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 다.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 라.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 마.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규정

- 가. 본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거함.
-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는 감정평가방식을, 제12조에서는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조정을 규정하고 있음.
- 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서는 대상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 제14조에서는 토지의 감정평가방법, 제15조에서는 건물의 감정평가방법, 제16조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3.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가. 구분소유건물의 평가방법

- 본건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성이 높은 구분건물로서 인근 유사 아파트의 일반적인 거래시세와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등의 제반 가치형성요인을 종합참작하여 건물부분과 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으며, 대상물건의 특성상 원가법과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곤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의 비교·검토는 생략하였음.
- 본건 구분소유건물은 감정평가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 현황도면, 외부관찰, 외부에서 투시가능한 내부전경, 인근탐문 등을 참작하여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나. 구분소유건물의 토지·건물 가격배분

-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의하여 평가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감정평가명세표상에 부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Ⅲ. 구분건물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1. 비교사례 선정

#### 가) 인근지역의 실거래사례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해당층 /최고층	전유면적 (㎡)	대지권 지분	사용승인일	거래가격 (전유면적당가)	사례일자
(가) **	공단동 114-4 행복아파트 101동 11층 1113호	11층 /15층	49.55	8,196 중27.951	1993.06.24	45,000,000 (@908,173/㎡)	2025.04. 09
(나)	공단동 114-4 행복아파트 101동 15층 150*호	15층 /15층	49.55	8,196 중27.951	1993.06.24	49,000,000 (@988,900/㎡)	2024.08. 28
(다)	공단동 114-4 행복아파트 101동 9층 90*호	9층 /15층	49.55	8,196 중27.951	1993.06.24	51,000,000 (@1,029,263/㎡)	2024.04. 30
(라)	공단동 114-4 행복아파트 101동 11층 111*호	11층 /15층	49.55	8,196 중27.951	1993.06.24	30,000,000 (@605,449/㎡)	2025.02. 05

#### 나) 비교사례의 선정

상기 거래사례 중 대상물건과 위치, 규모, 용도, 층별 및 위치별 효용도 등에서 정상 가격산정을 위한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실거래사례 중 아래의 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함.

대상물건별 사례기호	본건 기호(가) : 사례(가)
------------	------------------

### 2. 사정보정

비교거래사례는 인근지역의 유사물건 가격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사정보정요인 없음.( 1.00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3. 시점수정

### 가) 시점수정 자료의 선정

- 주거용 구분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간행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의 월간동향중 주택유형에 따른 지역별/월별 매매가격지수 활용하되, 세분화 지역별 매매가격지수를 우선 적용하여 산정함.

### 나) 시점수정의 산정

#### (1) 경북 구미시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2025-04-09 ~ 2025-05-29 )

시점자료	(평가)기준시점 당시(a)	(거래)사례시점 당시(b)	시점수정치(c=a/b)
경북 구미시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99.8	100.0	0.99800 (-0.200% 하락)

▷ 시점수정치계산 : [ 경북 구미시 ] - [ 아파트 ] 매매가격지수( 2025-04-09~2025-05-29 )

사례시점 : 2025-04-09 : 거래시점의 직전달인 2025년 03월지수( 100.0 )를 적용함.

기준시점 : 2025-05-29 : 기준시점의 직전달인 2025년 04월지수( 99.8 )를 적용함.

▶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  $99.8 / 100.0 \approx 0.99800$

## 4. 지역요인 비교

사례물건과 대상물건은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요인 대등함( 1.00 ).

## 5. 개별요인 비교(가치형성요인)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호(가) : 구미시 공단동 114-4 행복아파트 101동 13층 1309호

◎사례(가) : 구미시 공단동 114-4 행복아파트 101동 11층 1113호

요인	항목(주거용)	사례	대상	격차율	비고
외부 요인	1. 가로의 폭 및 구조 등의 상태	보통	보통	1.00	동일단지내로 대등함
	2. 도심과의 거리 및 교통시설의 상태				
	3.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4. 자연적 환경(조망·풍치·경관 등)				
	5. 변전소·오수처리장 등 위험 및 혐오시설의 유무				
	6. 기타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				
건물 요인	1. 시공의 상태	보통	보통	1.00	동일단지내로 대등함
	2. 통로구조				
	3. 승강기 등의 설비상태				
	4. 건물의 층수, 세대수 등의 규모				
	5. 경과연수 및 관리체계 등에 따른 노후도				
	6. 그 밖의 공동주택의 가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별 요인	1. 층별 효용 (방법, 승강기, 계단을 이용한 접근성 등)	101동 11층/15층 전유면적: 49.55㎡	101동 13층/15층 전유면적: 49.55㎡	1.00	층별, 위치별 효용 등 대등함
	2. 위치별 효용(조망, 개방감 등)				
	3. 향별 효용(일조, 채광 등)				
	4. 간선도로, 철도 등에 의한 소음의 정도				
	5. 1층 전용정원 및 최상층의 추가공간 유무				
	6.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지분				
	7. 그 밖의 공동주택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외부요인 × 건물요인 × 개별요인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6. 참고자료

### 가)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기호	소재지	해당층 /최고층	전유면적(㎡)	사용승인일	평가금액	기준시점	비고
			대지권		전유면적당가		
(ㄱ)	공단동 114-4 행복아파트 101동 6층 603호	6층 /15층	49.55	1993.06.24	46,000,000	2022.06.10	경매평가
			8,196 중27.951		(@928,355/㎡)		
(ㄴ)	공단동 114-4 행복아파트 101동 15층 1510호	15층 /15층	49.55	1993-06-24	48,000,000	2025-03-31	공매평가
			8,196 중27.951		(@968,718/㎡)		

### 나) 인근지역의 유사 물건 가격수준

본건과 유사한 규모의 구분건물 가격수준은 층별·위치별·향별·인테리어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45,000,000원 내외인 것으로 조사됨.

## 7. 시산가액 산출

대상 기호	비교사례(a)		사정 보정 (b)	시점 수정 (c)	지역 요인 비교(d)	개별 요인 비교(e)	면적비교 (f=대상/사례)		시산가액 (전유면적당 단가) (g=axbxcxdxexf)
	기호	가격					대상	사례	
(가)	(가)	45,000,000	1.00	0.99800	1.00	1.000	49.55	49.55	44,910,000 (@906,357/㎡)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V. 감정평가액 결정

### 1.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상기 시산가액은 대상물건의 층별·위치별 효용비율 및 제반 가격형성요인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인근지역내 동종 유사 물건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호가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산정하였는바, 그 금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 2. 물건별 감정평가액 결정

#### □ 구분건물

구분	기호	전용면적(㎡)	공용면적(㎡)	대지권비율 환산면적	감정평가액(원)	비고
구분 건물	가	49.55	17.1489	27.951	45,000,000 (@908,174/㎡)	-
구분건물 감정평가액 합계					45,000,000	

### 3. 감정평가액 합계

구분	면적(㎡)	감정평가액(원)	비고
구분건물	49.55	45,000,000	전유면적기준
감정평가액(합계)		45,000,000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114-4 행복 아파트 101동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3길 68-27		대피실	지하층	961.54			
			아파트	1층	1087.54			
			아파트	2층	1087.54			
			아파트	3층	1087.54			
			아파트	4층	1087.54			
			아파트	5층	1087.54			
			아파트	6층	1087.54			
			아파트	7층	1087.54			
			아파트	8층	1087.54			
			아파트	9층	1087.54			
			아파트	10층	1087.54			
			아파트	11층	1087.54			
			아파트	12층	1087.54			
			아파트	13층	743.62			
			아파트	14층	743.62			
			아파트	15층	743.62			
			펌프실 변전기실 계단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층	120.08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114-4	노인정 탁아소 관리사무실 공동화장실 전기실 계단실  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	186.8			
				준공업지역	8,196			
				< 내 >				
				13층 1309호 철근콘크리트조	49.55	49.55	45,000,000	비준가액
				소유권 1. -----	27.951			
			대지권	8,196		27.951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18,000,000 27,000,000	
<b>합 계</b>							<b>₩45,000,000.-</b>	
			이	하	여	백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소재 '비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한 통칭 '행복아파트 제101동 13층 1309호 아파트 단위세대'로서, 부근일대는 구미산업단지내의 중소규모 공장, 아파트, 공단주변 근린생활편의시설, 학교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 등 제반 교통사정 보통입니다.

##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건(제101동)중 13층 1309호 단위세대로서  
 사용승인일: 1993.06.24  
 외벽: 외장 페인팅 등  
 내벽: 벽지, 내장마감재, 일부 타일 등  
 바닥: 바닥마감재, 일부 타일 등  
 창호: 샷시유리 창호 등 입니다.

## (4) 이용상태

행복아파트 제101동 13층 1309호 아파트 단위세대로 이용중입니다.

## (5)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다각형의 토지로서 인접지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모든축종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생사업지구(구미국가1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원시설구역(2015-07-0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입니다.

##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기 타: -

# 광역위치도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114-4 행복아파트 101동 13층 1309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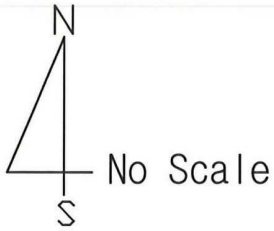
# 위 치 도



소 재 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114-4 행복아파트 101동 13층 1309호
-------	---



# 호 별 배치도



1318
1317
1316
1315
1314
1313
1312
1311
1310
(가) 1309
1308
1307
1306
1305
1304
1303
1302
1301

본건 (가)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114-4  
행복아파트 101동 13층 1309호





101 13 1309



101 13 1309



101 13 1309